#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20 발의연월일: 2023. 8. 8.

발 의 자: 강민정·서동용·민형배

앙이원영•김용민•김승원

진성준 · 최강욱 · 문정복

김경만 · 김영호 · 이용우

양정숙 • 유미향 • 권인숙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학교는 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에도, 교육행위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학교의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도 함.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 원과 침해행위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현행법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교 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관할청으로 하여금 이를 고발하도록 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 또한,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침해행위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받도록 하되, 특별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8조의3, 및 제2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관할청은"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경우 해당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비하발언, 폭언·욕설 등 언어적 폭력
- 5.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일방적인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강제성·강요성 민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관할청은 소속 교원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이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4항 또는 제18조의3"으로, "보호자"를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대 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 한 조치) ① -----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 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 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 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 위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교 원을 분리하여야 하며, 교육활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 <u>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u> <u>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u>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 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신 설> 동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성적 언동, 비하발언, 폭언·욕설 등 언어적 폭력
- 5.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일방적인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 목적이 정당하 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 강제성·강요성 민원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 ③ (생 략)

4		 	 	<u>관</u>
<u>할</u>	청은	 	 	

 ⑤ ~ ⑥ (생 략)

 제18조의3(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 3-----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등에 대한 조치) 관할청은 소 속 교원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 실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 의를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 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제18조제4항 또는 제18조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② (현행과 같음)

----.